

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진선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5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11.

발 의 자 : 진선미 · 박원서 · 방민수 ·
황주영 · 김남현 · 이원국 ·
서희원 · 제갑섭 · 박희자 ·
김영민 · 김연후 · 이승일 ·
한경혜 · 정미옥 의원 (14명)

찬 성 자 : 양평호 · 임인택 의원(2명)

1. 제안이유

사회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 할 경우 각종 범죄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 따라서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설치·관리자의 책무로 안전사항을 추가 (안 제4조)

나. 설치기준에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장치 설치 근거마련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있음

다. 합 의: 청소행정과(청소행정팀)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1) 전 문: 별첨

2) 입법예고 (2019. 2. 12. ~ 2. 16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”를 “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안전장치의 설치를 통하여”로 한다.

제5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1.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
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에게 <u>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</u>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안전장치의 설치를 통하여</u>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설치기준) ① ~ ④ (생략) <u>(신설)</u></p>	<p>제5조(설치기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</u> 1. <u>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</u> 2. <u>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</u></p>